
		<h1>보도자료</h1> <p>2021. 11. 15.(월) 배포</p>			
보도일	2021. 11. 1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15.(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과 장 최우성 (☎ 044-203-6285) 사무관 성미정 (☎ 044-203-6973) 민간전문가 문주영 (☎ 044-203-6223)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입법 취지 실현 및 운영 내실화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11.16.~12.27./41일간)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 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 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 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함	제2조 제3항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10 이상 요청 시 소집,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함	제2조 제5항 및 제7항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2조 제8항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음	제2조 제9항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학교장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위원회는 열람 요청 가능	제2조 제10항

교육부 공고 제2021- 420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10.)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23
- 이메일 : mgy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령 제 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5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11항(중전의 제5항)중 “제4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